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차 해 영 의원)

의안 번호	25-122
----------	--------

발의년월일: 2025. 10. .

발의자: 차해영, 권영숙, 남해석, 오옥자,
이한동, 채우진, 최은하, 홍지광

1. 개정이유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과 추진방향 설정 등 자문 및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명확화 규정(안 제3조)

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능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0조~제11조)

다. 기타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8조의2)

3. 관계법령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나. 「소득세법」 제168조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2025. 9. 30. ~ 10. 10.

나. 의견제출: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를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를 “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로 한다.

제3조 전단 중 “**두고**”를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의2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소상공인기본법</u> 」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소상공인기본법</u> 」 제3조-----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소상공인”이란 「 <u>소상공인기본법</u> 」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1. ----- <u>이</u> 란 「 <u>소상공인기본법</u> 」 제2조-----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주소와 사업장을 <u>두고</u>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는 제6조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 ----- <u>두고</u> 「 <u>소득세법</u> 」 제168조 또는 「 <u>부가가치세법</u> 」 제8조에 따라 ----- -----. ----- -----.
제8조의2(폐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폐업하였거나	제8조의2(폐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마포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생략)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행동지침, 행정조치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피해지원금 지원

3. (생략)

<신설>

-----.

-----.

1. (현행과 같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조제1호-----

3.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제10조 (생 략)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 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 금 운용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 결하거나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 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	---

【관 계 법 령】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2021. 3. 9.] [법률 제17623호, 2020. 12. 8., 일부개정]

-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 2025.07.01.] [법률 제20615호, 2024.12.31., 일부개정]

-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

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5.07.01.] [법률 제20776호, 2025.03.14., 일부개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를 말한다)는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 ⑪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전단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개업 신고를 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신청
 2.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후단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휴업·폐업·변경 신고를 한 경우: 제8항에 따른 해당 휴업·폐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3.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교통·에너지·환

경세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
를 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록 신청 또
는 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변경등록 신청

4.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 또는 「교통·에너지·환
경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양수, 상속, 합병 신고를 한 경우: 제
8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요인: 해당 없음(비용 미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관광경제국 경제진흥과 김주희
연 락 처	02-3153-8572